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51729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11. 18. 체결된 37,3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는 C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2. 3. C에게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와 C은 C이 B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쌍방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였고, B는 2017. 12. 2.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B는 2020. 11. 23.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하면서 C이 인수하기로 한 B의 금융채무, B의 C에 대한 다른 채무 등을 정산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실제 지급받을 매매잔금을 137,3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C은 2017. 10. 16. 위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B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선지급하였고, 2020. 11. 18. B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2021. 3. 12. B에게 2021.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959,65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체납 내역(2022. 6. 11.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양도소득세	2020년	2020-11-30	2021-03-31	240,959,654	273,358,4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 11. 18. 피고에게 위 37,300,000원을 증여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0. 11. 30.로서 위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그 전에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실제로 서초세무서장이 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1,686,081,405원이던 반면 소극재산은 2,612,353,709원으로, B는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926,272,304원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B가 피고에게 37,3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통장만 피고의 통장을 통하여 위 매매잔금 중 37,3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 37,300,000원은 모두 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B는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4호증(약정서), 을 제5, 7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I이 B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2018.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1298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B와 C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C의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C은 B의 G은행 대출금채무 235,000,000원과 인천 중구청에 대한 개발분담금채무 63,000,000원의 인수를 보류하였고, B는 G은행에 대한 B의 대출금이자 자동이체 납부계좌를 C의 은행계좌로 변경하면서 B의 G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소송 종료 및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인도할 때까지 B가 부담하기로 C과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20. 8. 3.부터 2022. 5. 15.까지 피고의 앞서 본 계좌에서 C의 계좌로 매월 1,200,000원, 합계 21,600,000원이 자동이체되었으며 이는 B의 G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자동이체된 사실, 또한 B는 2015. 9. 25. J 명의로 K은행에서 450,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앞서 본 계좌에서 매월 1,770,000원을 이자조로 J의 처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9. 23.부터 2022. 5. 15.까지 이와 같은 용도로 이체한 돈이 35,4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피고의 위 은행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B가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37,3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에도 이를 모두 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B가 피고에게 위 37,3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